

#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b>1. 학교법인</b>	① 학교법인명	학교법인 송의학원	② 이사장 성명	윤 순 희
	③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 10		
	④ 전화번호	02-778-1691	⑤ FAX	02-752-8924
	⑥ 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b>2. 설치·경영 대학교</b>	⑦ 대학교명	송의여자대학교	⑧ 총장 성명	윤 승 진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 10		
	⑩ 전화번호	02-3708-9000	⑪ FAX	02-773-2625
	⑫ 입학정원	1,650명	⑬ 기타 동 법인 설치 · 경영 학교명	송의초·중·고등학교

### 3.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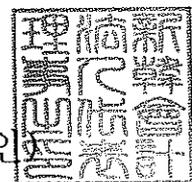
구 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요약
⑭ 감사의견 ⑮ 한정사항 ⑯ 특기사항 ⑰ 기타 ⑮ ⑯ 이외 의 중점 확인사항 관련 위반사항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송의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치한 송의여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6년 2월 29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와 운영성과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의거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14.11.26),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상 문 (인)



**학교법인 송의학원 이사장 윤순희 귀하**

첨부서류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내지 제3의4호 서식) 및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교육부 고시 제2014-55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외부감사결과 집계표 등(별지 제4호 내지 제4의5호 서식)

# 新韓會計法人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議事堂大路 8, 8層  
(汝矣島洞)

代表電話: 782-9940  
F A X: 782-9941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회 귀중

2016년 4월 20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승의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승의여자대학교 교비회계의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그리고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합산자금계산서, 합산운영계산서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승의학원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승의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치한 승의여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수지와 운영성과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6년 2월 29

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 한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李相文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2015.03.01~2016.2.29	학교법인명	송의학원	학교명	송의여자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여부				
	법인에 속하는 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	“	
2.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	“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	“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	“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	“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	“	
7. 기타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해당사항없음	“	“	“	

##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세부 내역

회계연도	2015.03.01~2016.2.29	학교법인명	송의학원	학교명	송의여자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내용	관련 법령	위반 금액 (단위:천원)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사립학교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N/A		
2.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사립학교법 제29조	N/A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N/A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N/A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N/A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N/A		
7. 기타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해당사항없음	-	N/A		
( - ) 건					